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,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(안 제16조제2항 일부 개정)

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(안 제23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12.31~9999.12.31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2항의 “도자기점 등 전통문화”를 “도자기점, 악기제조·판매·수리업, 기타 창작 및 문화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문화”로 하고,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문화지구의 지정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“민속 공예품점·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”이란 민속공예품점, 골동품점, 필방(筆房), 표구점, <u>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</u>을 말한다. ③ ~④ (생략)	제16조(문화지구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자기점, 악기제조·판매·수리업, 기타 창작 및 문화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문화</u>----- -----. ③ ~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3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2605